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정보의 공개 〉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23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운영석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12.
3. 회부연월일 : 2026. 5.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등 교육기관은 약 2만 1천여 개에 달하는 등 교육기관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 및 교육성과 관련 정보 제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방대한 교육기관 체계 속에서 학부모가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학교운영 및 교육성과에 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범위와 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및 학교 간 정보 공개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형화된 통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생활지도, 학

교별 교육성과 등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정보 공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 교육정보를 홈페이지 공개, 학부모 통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3조의4(교육정보의 공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정보 공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 <u>1.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성과에 관한 사항</u> <u>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u> <u>3. 학생의 학습·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u> <u>4. 그 밖에 학부모의 교육 참여 및 학교 선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③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u> <u>1. 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u>

	<u>2. 학부모 대상 정기 통지</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u> <u>④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시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u> <u>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공개의 범위, 기준,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재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를 통해 학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학부모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그런데 학교알리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주로 학교 현황, 교원 현황, 예산, 학업성취도¹⁾ 등 정형화된 통계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부모가 알기를 원하는 학교의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진로·학습지도 현황, 생활지도 및 학교문화 등 개별 학교의 핵심적인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1) 단위학교별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학기말 성적 결과로서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과목별 성취도별 분포비율

□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정보 공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진로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최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요구가 확대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및 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교육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현행 「교육기본법」은 제26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교육정보공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²⁾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는 학교알리미를 통하여 학교 현황, 교육과정 운영, 교원 현황, 예산·결산, 학업성취도 등 다양한 교육정보를 공시

2) 「교육기본법」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있으며, 교육청 또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바,

교육정보 공개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교육기본법」 제26조의2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한 정책목적을 지향하고 있어 현행 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의 배경은 정보공개 근거의 부재가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정보가 학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적 문제로 보이므로, 별도 조항을 신설하기보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상 공시항목을 보완하는 방안 등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³⁾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현행법에 따라 ‘교육기관 정보공시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행 법·제도 체계 내에서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시·도 교육청(세종, 경기, 광주, 인천, 서울, 강원, 전남, 충북)은 이미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통해 충분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 추가적인 법제화는 실효성 없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과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3) <참고자료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대상 정보

초등교사노동조합,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도 교육기본법에 별도로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중복 입법에 해당하며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유·초·중등 정보공시 관련 현황' 26년

1. 공시 대상 및 범위

- (유치원) 7,449개 유치원 대상 7개 항목 23개 공시범위에 대한 정시 2회(4, 10월) 및 수시공시

<유치원 정보공시 공시 일정>

구분	4월 공시	10월 공시	수시공시
범위	유치원 기본현황(학급수 및 원아수 등) 및 회계 예산서 등	유치원 기본현황(학급수 및 원아수 등) 및 회계 결산서 등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등
범위수	19개 범위	13개 범위	3개 범위
자료 입력	3.12.(목)~4.2.(목)	9.14.(월)~10.2.(금)	수시
검증 및 수정	4.3.(금)~4.20.(월)	10.6.(화)~10.21.(수)	
대국민서비스	4.30.(목)	10.30.(금)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학교) 12,348개교* 대상 14개 항목 51개 공시범위에 대한 정시 4회(4, 5, 9월, 11월) 및 수시 공시 * 초 6,300교, 중 3,301교, 고 2,385교, 기타 362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공시 일정>

구분	4월 공시	5월 공시	9월 공시	11월 공시	수시공시
범위	교과별 교과진도 운영계획 및 학교폭력 등	학년·학급당 학생수 및 입학생 현황 등	학교회계 결산서 등	졸업생의 진로현황 등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등
범위수	18개 범위	18개 범위	8개 범위	2개 범위	4개 범위
자료 입력	3.23.(월)~4.14.(화)	5.4.(월)~5.15.(화)	8.24.(월)~9.15.(화)	11.9.(월)~11.24.(화)	수시
자료 취합·검증	4.15.(수)~4.17.(금)	5.18.(월)~5.20.(수)	9.16.(수)~9.18.(금)	11.25.(수)~11.27.(금)	
자료 수정	4.20.(월)~4.29.(수)	5.21.(목)~5.28.(목)	9.21.(월)~9.29.(화)	-	
대국민서비스	4.30.(목)	5.29.(금)	9.30.(수)	11.30.(월)	

2. 공시 방법

-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 학교알리미(schoolinfo)